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표기 명확화와 근거 조항 및 어구 수정(안 제5조, 제17조)
나.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수정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붙임)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 타

- 입법예고(2024. 2. 1. ~ 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영 제48조의4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”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따른다. 다만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심의회회의 업무) ① 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 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</p> <p>9. ~ 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 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심의회회의 업무) ① ---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-----</p> <p>9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무상사용 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따른다. 다 만,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 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.

1.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회계과장 권혁영
연락처	(033) 330 - 2123